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가단249951 판결 [입찰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7119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가단249951 판결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양안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고현석

변론 종결2021. 10. 28.

판결 선고2021.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697,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2. 31. C대학교 D기숙사(사립) 건립사업 정보통신 공사 입찰공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정보통신 공사', 위 공고를 '이 사건 제1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위 공고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8. 입찰 및 입찰보증금

나.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가격입찰서와 동봉(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무효의 사유가 밝혀졌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1) 보증기간: 입찰일로부터 30일까지

2) 피보험자: A 유한회사

13. 기타사항

라. 건축공사 낙찰자 선정에 따라 계약 및 착공 시점이 확정될 예정임

마. 낙찰자는 A유한회사 대표이사 및 C대학교 총장과 3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통신 공사에 관하여 입찰금액을 294,439,758원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1. 1. 25. 피고를 이 사건 정보통신 공사 업체로 선정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21. 2. 4. C대학교 D기숙사(사립) 건립사업 전기 공사 입찰공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전기 공사', 위 공고를 '이 사건 제2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위 공고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8. 입찰 및 입찰보증금

나.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가격입찰서와 동봉(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무효의 사유가 밝혀졌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1) 보증기간: 입찰일로부터 30일까지

2) 피보험자: A 유한회사

13. 기타사항

라. 건축공사 낙찰자 선정에 따라 계약 및 착공 시점이 확정될 예정임

바. 낙찰자는 A유한회사 대표이사 및 C대학교 총장과 3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피고는 이 사건 전기 공사에 관하여 입찰금액을 1,030,000,000원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다른 회사를 이 사건 전기 공사 업체로 선정하였는데 그 회사가 입찰을 포기하자 2021. 3. 24. 피고를 이 사건 전기 공사 업체로 선정하였다.

마. 원고는 2021.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계약내역서를 첨부한 뒤, 2021. 4. 28.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바. 피고는 2021. 4. 13., 2021. 4. 20. 원고에게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사. 이후 피고는 2021.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통신 공사 및 이 사건 전기 공사 계약우선자격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9 내지 11호증, 제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1, 2 공고(이하 '이 사건 각 공고'라 한다)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 체결 예정일 전날인 2021. 4. 27. 정당한 이유 없이 통신선 등의 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사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고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이하 '이 사건 각 입찰보증금'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1) 이 사건 각 공고의 내용은 입찰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의무를 정한 것이고, 이와 별개로 입찰자가 발주자에게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이 사건 각 공고의 입찰보증금 물취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무효이거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입찰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만 유효한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3) 이 사건 각 공고에 의하면 '낙찰자가 5일 내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입찰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4)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던 중 원자재 가격의 이례적인 상승으로 피고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고 8항의 의미

이 사건 각 공고 8항에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사건 전기공사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무효의 사유가 밝혀졌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약금의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민법 제398조 제4항), 피고가 주장한 대로 피고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한 경우에만 원고가 입찰보증금을 물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공고 8항에서 피고에게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되, 보증기간을 '입찰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제출할 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정해놓은 것일 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공고 8항 자체가 입찰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만 유효한 조항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없다.

나. 이 사건 각 공고 8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공고 8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인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고 8항은 낙찰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낙찰일로부터 5일 내지 10일 이내'로 기한의 제한도 두고 있는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도 공기업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재재수단이 없는 점, 비록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예약단계이기는 하나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입찰금액의 5%를 예정한 것이 그것이 거래관행상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시 입찰금액의 5% 이상인 입찰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고 8항에 따라 피고에게 입찰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정당한 사유 존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고에서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사건 전기공사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고 정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정보통신 공사 업체 선정시 향후 계획상 계약체결일을 '2021. 2. 중순', 이 사건 전기 공사 업체 선정시에는 '2021. 4. 초'라고 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21. 4. 13.경 피고에게 2021. 4. 28. 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 체결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낙찰일(이 사건 정보통신 공사는 2021. 1. 25., 이 사건 전기 공사는 2021. 3. 24.)로부터 5일(이 사건 정보통신 공사) 내지 10일(이 사건 전기 공사)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는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고 제8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고시 '건축공사 낙찰자 선정에 따라 계약 및 착공 시점이 확정될 예정임'이라고 정한 사실, 업체선정결과 통보시에도 '건축공사 입찰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 예정일 전 계약 체결 담당자를 통지한 사실, 계약 체결 예정일 전날인 2021. 4. 27. 원고에게 계약 체결 포기 의사를 밝힌 사실도 인정되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공고 제8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고 제8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홍지현